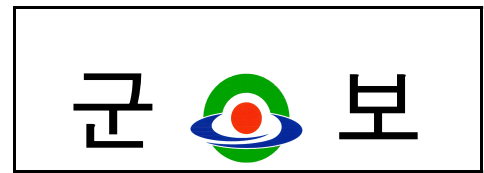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88호 2019. 9. 16.(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358호)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59호)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조례 제2360호)
-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361호)

규 칙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규칙 제1260호)

예 규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 일부 개정예규(예천군 예규 제19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58호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시그니처, 엠블럼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군기 : 별표 4
5. 군가 : 별표 5
6.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별표 6
7. 군목 : 소나무
8. 군화 : 목련
9. 군조 : 독수리

제4조(상징물의 관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3조 각 호의 상징물 관리 부서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같은 조 제6호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군기) ① 군기는 정기와 약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제작하고 실내 게양 시 사용하며,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하며,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사용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제작 등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 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3%

2. 행사 등 수익사업 외 사용 : 1회, 건당 100,000원

② 사용 허가기간,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천군 군기 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심벌마크, 시그니처, 엠블럼

가. 심벌마크(symbol mark)



푸르고 아름다운 산을 형상화 한 것으로 예천의 청정한 산을 상징
맑은 물을 형상화 한 것으로 두 팔로 포용하는 화합을 상징
활의 과녁과 기름진 대지를 상징

나. 시그니처(signature)



다. 엠블럼(emblem)



【별표 2】

브랜드 슬로건

가. 슬로건(slogan)



■ 슬로건 설명

-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 도시로 브랜드를 특화하고 예천군의 대표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개발
- 예천의 싱그러운 자연을 상징하는 산과 물 속에 호박벌을 삽입하여 청정 자연도시, 곤충도시 예천을 상징

나. 그리드(grid)



【별표 3】

캐 리 커

가. 예천군 캐릭터

1) 기본형



■ 캐릭터 설명

- 명심보감에 기록된 효자 도시복을 형상화

2) 응용형(A)



3) 응용형(B)



나. 곤충연구소 캐릭터



■ 캐릭터 설명

- 곤충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벌을 형상화 함
- 코니는 머리뿔가위벌
페디는 호박벌을 모델로 함

【별표 4】

군 기

가. 정 기



■ 군기 설명

- 기면은 흰색으로 하고 길이와 넓이는 2와 3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80cm 넓이 120cm로 한다.

나. 약 기



【별표 5】

군 가

작곡 : 권상헌

작사 : 장익환



1. 소 백 산 우 람 차 게 나 래 를 퍼 고

내 성 천 굽 이 쳐 서 기 림 진 들 판

물 맑 고 인 정 많 은 우 리 예 천 은

옛 부 터 인 재 많 은 선 비 의 고 장 빛 내

자 우 리 예 천 슬 기 의 고 - 장

샘 물 이 솟 아 나 듯 영 원 하 리 라

【별표 6】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공동브랜드 설명

- 네이밍 의미 : 신도청 중심지역 예천이 새롭게 움트고, 역동적으로
발돋움 한다는 의미로 예천의 희망찬 미래를 뜻함
- 디자인 컨셉 : 물 좋은 고장 예천을 상징하는 대표적 명승지 회룡포를
연상케하고 청색 디자인 컨셉은 맑은 물과 청정의 고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됨을 의미

【별표 7】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

상징물 종류	관리부서	비고
심벌마크, 시그니처, 엠블럼	기획감사실	
브랜드 슬로건	기획감사실	
캐릭터(예천군 캐릭터)	기획감사실	
캐릭터(곤충연구소 캐릭터)	곤충연구소	
군 기	총 무 과	
군 가	기획감사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농 정 과	
군목, 군화, 군조	기획감사실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전 자 우 편 주 소	
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사용 내용 (구체적으로)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사 용 준 수 각 서

- 성명(대표자)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상기 본인은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위반 시
사용승인 취소 및 이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특정한 정치활동 조장 또는 개인의 심벌·상표·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 상징물을 임의로 변경하여 예천군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다.

다. 사용승인서 상의 용도 및 기간에 한하여 사용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전 자 우 편 주 소	
사용 상징물			
변경사용 기간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전화)		
승인내용	상징물 종류			
	승 인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변경)내용			
	승인내용·조건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59호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재산관리담당”을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영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에 따라 재산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60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예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2조(「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1~6급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하고,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별표 1의 관람료 면제란 중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3조(「예천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를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61호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을 “예천군”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단체”를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출향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 공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행정 기관”을 “예천군”으로 한다.

제8조의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정 주요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친절공무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은 예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적극적인 친절행정을 실천하여 공직사회 내 친절분위기 확산과 친절서비스 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8조의5(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2. 퇴직(정년, 명예, 조기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군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공로상은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 상패, 상금, 상품권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8조의5제2호의 경우 퇴직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5”로, “실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본청에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및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중 “규칙으로써”를 “규칙으로”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호

공 로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공 로 문)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60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 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
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2항 중 “장애등급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
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장애인(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9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예규 제19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 일부개정예규

제1조(「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의 개정) 예천군 문화회관 영화·공연 관람료 징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